

장학기금관리규정

제 정 1999.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기본 지침을 정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관리부서) 기금의 관리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 다만, 기금의 집행은 학생복지처의 집행계획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이라 함은 재단 출연금, 외부기관 기부금,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본 대학에 무상으로 후원된 재산을 말한다.

제4조 (회계처리)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의 세입과 세출 예산에 관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행정지원처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별도 계좌설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③기금의 집행은 학생복지처 집행계획에 따른다.

④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제2항의 계좌에 적립한다.

제5조 (영수증의 발급과 사의(謝意)의 표시) 기금의 기부시에는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의(謝意)를 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기금은 일정기간 적립하며, 기금 적립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학생 장학금 지급
2. 기타 장학에 필요한 경비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령)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